

### ◎ 학점인정 신청 시 학점원별 제출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제출서류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지 제6호 서식	없음																
학점인정 대상학교	별지 제7호 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적 또는 졸업증명서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 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자격	별지 제9호 서식	<table border="1"> <tr> <td>온라인</td> <td>없음 ※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당해 분기 접수계획 참조</td> </tr> <tr> <td>방문</td> <td>자격증 원본(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td> </tr> </table>	온라인	없음 ※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당해 분기 접수계획 참조	방문	자격증 원본(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온라인	없음 ※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당해 분기 접수계획 참조																	
방문	자격증 원본(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별지 제10호 서식	<table border="1"> <tr> <td>시험합격</td> <td>없음</td> </tr> <tr> <td>시험면제 교육과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신청 화면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 제출서류 없음</li> <li>- 온라인신청 화면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 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li> </ul> </li> <li>방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li> <li>* 성적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성적증명서 제출</li> </ul> </li> </ul> </td> </tr> </table>	시험합격	없음	시험면제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신청 화면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 제출서류 없음</li> <li>- 온라인신청 화면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 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li> </ul> </li> <li>방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li> <li>* 성적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성적증명서 제출</li> </ul> </li> </ul>												
시험합격	없음																	
시험면제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신청 화면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 제출서류 없음</li> <li>- 온라인신청 화면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 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li> </ul> </li> <li>방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li> <li>* 성적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성적증명서 제출</li> </ul> </li> </ul>																	
국가무형 문화재	별지 제1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신청           <table border="1"> <tr> <th>등급</th> <th>제출서류</th> </tr> <tr> <td>보유자</td> <td>없음</td> </tr> <tr> <td>전수교육조교</td> <td></td> </tr> <tr> <td>이수자</td> <td></td> </tr> </table>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 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 무형문화재'] 탐색         </li> <li>방문 신청           <table border="1"> <tr> <th>등급</th> <th>제출서류</th> </tr> <tr> <td>보유자</td> <td>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td> </tr> <tr> <td>전수교육조교</td> <td>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td> </tr> <tr> <td>이수자</td> <td>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지참)</td> </tr> </table>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 확인서            *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학습자 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탐색         </li> </ul>	등급	제출서류	보유자	없음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급	제출서류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지참)
등급	제출서류																	
보유자	없음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급	제출서류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지참)																	

\* 별지서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함.

\* 일부 자격은 제출서류 없음(매 분기 공지되는 접수계획 참조).

### ◎ 기타 신청 종류 내용 및 방법

신청 종류	내용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기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온라인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현재 진행 중인 학위종류·전공을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절차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재심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재심신청서,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제출	방문신청

## 5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 ◎ 학위신청

-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해야 함.

### ◎ 학위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2월 학위신청(전기 학위수여)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 학위신청(후기 학위수여)	6월 15일 ~ 7월 15일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 2월 학위신청자는 4분기(10월), 8월 학위신청자는 2분기(4월)에는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 신청 분기의 접수계획 확인요함.

### ◎ 학위수여

- 매년 2월(전기)과 8월(후기) 두 번의 학위수여가 이루어짐.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전기)에 한번만 개최됨.
- ※ 학위수여 후 학습자의 개인 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함.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 ◎ 학점은행제 학위의 법률적 효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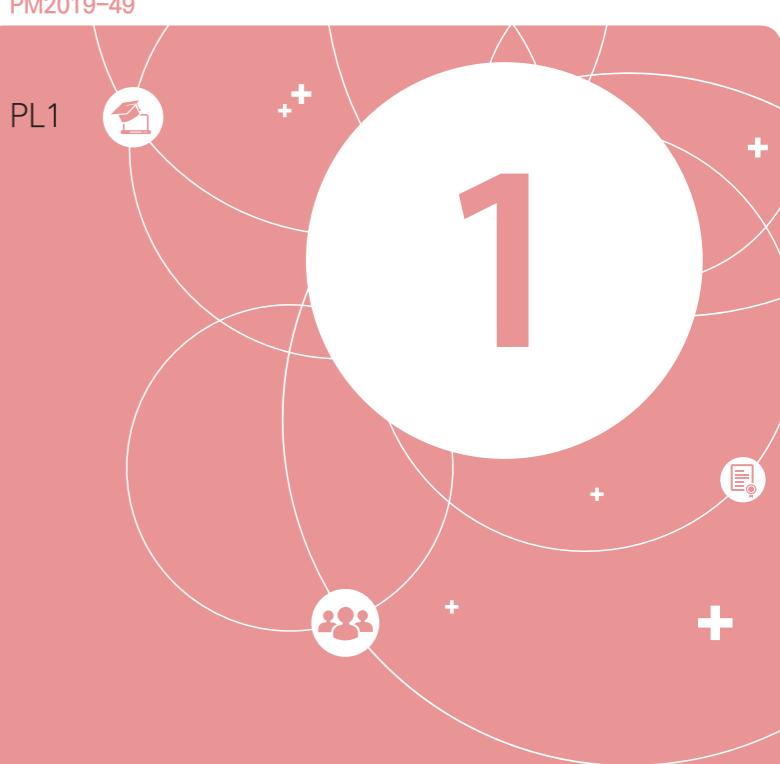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입니다.

- 본 자료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www.cb.or.kr](http://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 간행물



주 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전 화 | 1600-0400  
팩 스 | (02) 3780-9850  
홈페이지 | [www.cb.or.kr](http://www.cb.or.kr)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 1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는 「등록·신청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등록·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① 학점은행제 흐름도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 학습자등록 신청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방문 신청

#### 학습설계 상담

- 보유학점에 대한 학습설계 상담
- 온라인학습설계 상담시스템 이용

#### 학위수여요건 충족을 위한 학점 이수

- 6가지 학점 취득방법
  - 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시간제 등록
  - 자격 취득
  - 독학학위제
  - 국가무형문화재

#### 학점인정 신청

-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방문 신청

#### 인정학점 확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

#### 학위 신청

-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청
-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신청

#### 학위 수여

- 학위수여시기 : 매년 2월/8월
- 학위수여식 : 2월 개최

\* 위 흐름도는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흐름도입니다.

## 2 학점은행제 관련 법 규정 안내

구분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5. 03. 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1. 13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04. 10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11. 13 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2018. 12. 20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018. 12. 20 개정
제24차 표준교육과정	2019. 05. 14 고시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2018. 10. 01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 05. 10 개정
2019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 접수 계획 공고	2018. 11. 22 공고

## 3 학위종류 및 학위수여 요건

### ② 학위종류

- 학사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 전문학사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 타전공학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하는 학위

### ③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b>총학점</b>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②	<b>전공</b>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b>교양</b>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⑥	<b>해당 대학의 학점</b>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⑦	해당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④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1. 전공필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함.
2.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모든 학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함.
3.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4.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5.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함.
6.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타전공 또는 전문학사 타전공,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는 전문학사 타전공 진행이 가능함.

##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 ⑤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학위종류 및 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처음 학점인정 신청 시 또는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최초 1회 신청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하나,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등록해야 함).

### ⑥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접수일정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일정 확인요함.

\* 방문신청은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토·일, 공휴일 제외)

\* 1/4분기, 3/4분기 팔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 :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온라인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야 함.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 ⑦ 신청 종류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수료
	방문	온라인	
학습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li> <li>•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 1부</li> <li>•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등학교졸업정보 확인 가능자 및 온라인 증명서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제출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 본 1부</li> <li>• 최종학력증명서 1부</li> <li>• (고등학교졸업정보 확인 가능자 및 온라인 증명서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제출 면제)</li> </ul>	4,000원
학점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보건계열은 학습자등록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단, 방문신청의 경우 면허증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li> <li>•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신청 불가)</li> <li>•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력확인서] 제출</li> <li>-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 (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불임자료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신청서 1부</li> <li>•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li> <li>•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 본 1부</li> <li>•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li> </ul>	1학점 당 1,000원
학위수여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해야 함(신청학점에 따라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기별 접수계획을 통해 확인요함).	
학위수여	※ 수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신청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단, 시·도교육청 방문접수는 카드 결제 불가).</li> <li>- 온라인신청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li> </ul>		